

특별 시방서

-WEBNET 설치 공사-

2021

시 방 서

1. 적용범위

- 1) 본 시방은 WEBNET을 이용한 공사에 설치되는 WEBNET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.
- 2) WEBNET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, 조립, 시공 되어야 한다.

2. 품질 및 규정

- 1) 본 시방에 적용되는 WEBNET을 구성하는 제품은 제조 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정비하여야 하며 품질과 시공 능력에 관하여 규정 한다.

2) 공통사항

- ISO 9001:2015 또는 ISO 9002에 준하는 품질 시스템을 가지고서, 품질 시스템 등록 / KCS 인증 / EPC 성능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규정 하며 구입자 국가의 관리 관계 부서 혹은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출 한다.
- WEBNET의 소재는 Stainless steel AISI316 제품 이어야 하며 WEBNET 및 그 물품을 모조한 제품은 성능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므로 그 기준을 규정한다.
- 시공 전 WEBNET의 시험 성적서등 인증관련 서류를 제출한다.
(EPS 성능인증 기준)
- 시공 전 현장을 실측한 후 제작, 설치도,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,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.

- WEBNET을 지탱 교차하는 WIRE ROPE는 30880-0150-01 과 30584-0150-20 은 6TON 이상의 유압 프레스로 가공 압착하여 견고함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모양 또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.

3) 기타사항

-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-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서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
3) 자재

1) 규격 및 재질

가) WEBNET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.

다음에 나타나는 재질은 이 시방서에 적용됨으로서 이 시방서의 규정일부를 구성 한다. (한국 산업규격 KS)

나) K.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.

다)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.

2) 물품 규격

가) WEBNET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.

- Stainless steel net, WEBNET micro with clamp

- WEBNET - MESH : 20261-0150-80 20261-0150-060 20261-0150-050

- WIRE ROPE - 6 X 7 + WC 1.5mm 이상

나) 기타재료

- 부속자재 및 기타 재료는 한국 산업규격 KS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.
- 조립, 설치 및 보강 등 기타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한다.

4) 설계, 제조 및 설치

1) 설계

- 가) 계약 상대자는 설계도면, 시방서 및 제공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 하되, 품질 및 규정에 준하여 설계, 설치될 현장의 조건을 감안하여 성능이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.
- 나) 제품 설계 시 조립된 WEBNET 의 일부가 변형이나 피로도 발생으로 인한 부분 교체가 가능 하도록 설계 하여야한다.

2) 제조 및 가공 방법

가. 제조 및 가공

- WEBNET 와 구성하는 부속자재는 설계도면과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가공 조립 되어야 한다.
- WEBNET 을 연결하는 클램프 등은 설계도면에 준하여 모양과 규격을 제조 가공하여야 한다.
- WEBNET의 소재는 Stainless steel AISI316 제품이어야 하며 국가표준의 KS D 7010 항공기용 Wire rope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WEBNET을 지탱 교차하는 WIRE ROPE는 30880-0150-01 과 30584-0150-20 은 6TON 이상의 프레스로 가공 압착하여 견고함을 유지하여야 한다.

3) 조립 및 설치방법

가) WEBNET 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나) WEBNET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,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다)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참조 변경시공 할 수 있다.

5) 현장설치 주의사항

가) 반입 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.

나) 현장설치 시 사전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 없이 제작 설치한다.

다) 설치 시 주주 및 기초, 각 부재의 접합 부위는 강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해야 하며 수직 수평이 맞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라)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 등에 드릴 작업하여 인서트 작업 시 볼트의 규격을 확인 후 유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작업한다.

마) 횡선의 와이어 설치와 WEBNET의 설치 시 생명줄을 사용하여 아래로 추락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바) 각 각의 공정 완료 후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다시 한 번 검토 하여야 한다.

6) 일반 조건

- 가) 계약 대상자는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 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 전에 공사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, 계약 후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.
- 나) 본 물품의 가격 변동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 73조 1항 1조에 의거 가격 조정 없이 납품 한다.
- 다) 본 물품은 우리공사의 필요에 따라 협의 분할 납품을 요구 할 수 있다.
- 라) 계약 대상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지정 장소에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.
- 마) 계약대상자는 물품 납품 설치 시 발생한 제반사항(인적, 물적 피해 등)은 신속히 원상복구 및 보상 조치하여야 한다.

7) 특별사항

1) 특허권

- 가) 계약상대자는 타인의 특허권을 무단 침해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(소송 비용, 손해배상 및 기타 경비 등)을 부담하여야 하며, 이로 인하여 공단에 이의제기 및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.
- 나) 본 공사는 아래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와 발주자간 기술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최종 낙찰자는 특허 기술사용 및 기 자재 구입.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반드시 공법보유자간에 체결된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**특허 보유 업체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착공시까지 제출**해야하며, 특허부분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 상대방에게 있습니다.**(입찰 시)**

○특허사용 협약현황 (성능인증 인천-20170251-1-01)

구분	특허명(공법명)	지정번호	등록일(지정일)	지정기관	보유자
특허	와이어로프 그물망	특허제10-113866호	2012년04월10일	특허청	이세동
특허	클램프 제조방법	특허제10-1096588호	2011년12월14일	특허청	이세동

※ 성능인증(특허공법) 보유 업체 연락처
주식회사 대양로프시스템 (☎ 032-818-2938)